

(주)오케이저축은행 앞

년

아름

일

채무자:

(인)

주소:

채무자는 (주)오케이저축은행(이하 “저축은행”이라 합니다.)과 약정한 20 년 월 일자 여신거래약정서(가계용)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.

본 약정서는 신용대출 연소득 이내 취급 규제^{주1)}를 적용하지 않는 특례 민간 중금리 대출인 '중금리 생활안정대출' 거래를 하기 위한 약정입니다.

주1)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 [금융위원회 발표,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(2025.6.27.)]

채무자가 생활안정자금을 사용할 목적은 다음과 같으며, 목적 범위 내에서 자금을 사용합니다.

생활안정자금 사용 목적	

채무자는 본 대출 실행일부터 1년 또는 대출 전액 상환시기 중 빠른 일자까지 투기지역·투기과열지구·조정대상지역내 주택(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)을 구입^{주2)}하지않기로 합니다.

주2) 매매, 증여, 신축 등에 따른 소유권 취득. 다만 상속에 의한 취득은 제외

제2조 및 제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본 대출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하게 되고, 그에 따라 본 대출을 변제할 의무를 집니다.

제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본 대출 전액 상환여부와 관계없이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자의 약정 위반사실이 제공되며, 제공일로부터 향후 3년간 금융기관^{주3)}의 주택 관련 대출^{주4)}이 제한됩니다.

주3)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

주4) 「상호저축은행업무감독규정」 <별표5> 제1호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및 저세자금대출 등